영남대학교 산학협력중점 전임교원 인사규정

제정 2012.10. 5. 법인이사회 개정 2013.10.16. 법인이사회 개정 2015. 2.11. 법인이사회 개정 2016. 8.17. 법인이사회 개정 2017. 4.19. 법인이사회 개정 2018. 2. 7. 법인이사회 개정 2018. 2.28. 직권 수정 개정 2020. 6.17. 법인이사회 개정 2021. 2.18. 직권 수정 개정 2021.10.20. 법인이사회 가정 2022. 2.25. 직권 수정 가정 2022. 6.10. 직권 수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영남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산학협력중점 전임교원의 임용,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산학협력중점 전임교원은 산업체(민간 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현장실습 지도, 창업·취업지원, 산학연계프로그램 운영 등을 중점 수행하는 교원을 말한다.
 - ② 제1항의 산학협력중점 전임교원은 우리 대학교 교원인사규정(이하 "교원인사규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정년계열전임교원으로 한다.
- 제3조(직위) 산학협력중점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의 직위는 부교수, 조교수로 한다. 제4조(임무) 교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 2. 산학협력을 통한 연구
 - 3. 산학협력을 통한 봉사
 - 4. 현장실습 지도
 - 5. 창업·취업 지원
 - 6. 산학연계프로그램 운영
 - 7. 산학협력과 관련된 사업 참여 및 진행
 - 8. 기타 산학협력과 관련된 업무
- 제5조(소속) 교원은 각 대학(원)의 학부(과), 독립학부 또는 전문대학원, 산학협력단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8.2.7.>
- 제6조(겸무) 교원의 겸무에 관하여는 교원인사규정 제4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우리 대학교 교원겸무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형으로는 겸무할 수 없다.

제2장 임용

제1절 임용<개정 2016.8.17.>

- 제7조(임용권)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총장이 임용한다.<개정 2016.8.17.>
- 제8조(임용기간) 교원의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임용 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대해서는 재임용 심의 결과에 따라 재임용할 수 있다. 다만, 임용기간은 만 65세를 초과할 수 없다.
- 제9조(임용계약) 교원은 총장과 해당 교원과의 계약으로 임용하며, 교원의 임용계약서에는 임용직위, 임용기간, 보수, 근무조건, 재임용요건 등을 명시한다.
- 제10조(임용기간 계산) ① 제8조의 임용기간은 임용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되, 재임 중에 승진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다시 그 기간을 계산한다.
 - ② 임용기간이 학기 도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본다.
 - ③ 학교법인 영남학원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4.19.,2021.10.20.>
- 제11조(당연면직)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면직된다.
 - 1. 교원인사규정 제12조제1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 2. 만 6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달한 때
 - 3. 이 규정에 의거 재임용을 받지 못할 때

제2절 신규임용

- 제12조(신규임용시기) 교원은 매 학기 초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3조(신규임용) ① 교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이하 "공채"라 한다)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정분야의 저명한 석학 또는 전문가를 초빙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이하 "특채"라 한 다) 할 수 있다.
 - ② 교원 공채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고, 교원 특채에 관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특별채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4조(신규임용 제출서류 및 절차) 교원의 신규임용 제출서류 및 절차는 교원인사규정 제24 조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 제15조(자격) ① 교원으로 신규 임용되기 위해서는 교원인사규정 제27조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서 학사학위 취득 후 산업체 경력이 12년 이상이고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이어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 경력 기간을 2년 범위내에서 산업체 경력으로 대체하여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3.10.16.,2015.2.11.>
 - ② 산업체 경력이란 민간 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 단체) 등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을 말하며, 산업체 경력 인정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개정 2020.6.17.>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산업체 경력 자격기준을 완화할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2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라도 산업체 경력 자격기준을 중복하여 완화하지 아니한다.
 - 1. 기술 또는 제조기반 창업경험(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이더라도 창업경험으로 인정) 1 회 이상인 자 : 3년 완화
 - 2. 기술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 3년 완화
 - 3. 박사학위소지자 : 3년 완화(단, 산학협력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교원에 한함)<개정 2013.10.16.>

제16조(신규임용 시의 직위) 신규 임용되는 교원은 조교수로 임용된다.

제3절 승진임용

제17조(승진임용시기) 교원의 승진임용 시기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실시한다.

- 제18조(승진요건) ① 교원은 부교수 직위까지만 승진가능하며, 승진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1. 승진소요연수
 - 2. 필수연구업적 기준
 - 3. 교육업적 기준
 - 4. 산학협력업적 기준
 - ② 제1항제1호를 충족하기 위한 교원의 조교수에서 부교수 승진소요연수는 6년으로 하고, 승진소요연수 산정은 교원인사규정 제30조를 준용한다.
 -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별표 2]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 정 2015.2.11.>
 - ④ 재임용과 승진임용이 같은 날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여야 승진임용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 ⑤ 총장은 대학 또는 학부(과, 전공) 등에서 제3항의 요건을 상회하는 승진임용추천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체기준을 우선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제19조(필수연구업적·교육업적 평가) 필수연구업적·교육업적 평가는 교원인사규정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교육업적 평가기준은 [별표 3-1]의 기준을 적용한다.<개 정 2015.2.11..2020.2.5..2020.6.17.>
- 제20조(산학협력업적 평가) ① 교원의 산학협력업적 평가를 위하여「산학협력중점 전임교원 산학협력업적평가위원회」(이하 "산학협력업적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교원의 산학협력업적은 "산학협력업적평가위원회"에서 매 학기별로 아래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 1. 교원은 산학협력업적 평가를 위하여 매 학기 종료 후 산학협력실적 평가영역별 포트 폴리오를 소속 학부(과)장에게 제출하고 소속 대학 및 산학연구진흥팀을 거쳐 산학협 력업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개정 2015.2.11..2018.2.28..2021.2.18..2022.2.25.>
 - 2. 산학협력업적평가위원회는 교원이 제출한 산학협력실적 평가영역별 포트폴리오와 학부(과)장 의견서를 바탕으로 [별표 4]에 따라 산학협력업적 점수를 평가하고, 그 결과

를 총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15.2.11.,2018.2.7.>

- ③ 산학협력업적평가위원회 운영 및 산학협력업적 평가와 관련된 실무는 산학연구진흥팀에 서 담당하며, 산학협력업적평가위원회의 설치, 산학협력업적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8.2.28.,2021.2.18.,2022.2.25.>
- 제21조(승진임용 제출서류) 교원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1. 연구업적 목록 1부
 - 2. 필수연구업적물 각 1부
 - 3. [별표 5]의 승진임용에 관한 추천서 1부
 - 4. 학부(과) 교수회의록 1부 또는 소속 기관 운영위원회 회의록 1부
- 제22조(승진임용 제한, 절차 등) 교원의 승진임용 제한, 승진임용 절차, 승진임용 추천을 받지 못한 교원의 이의신청 등은 교원인사규정 제36조부터 제37조의2까지를 준용한다.

제4절 재임용

제23조(재임용 시기) 교원의 재임용 시기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자로 한다.

- 제24조(재임용 요건) 임용 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재임용되기 위해서는 임용기간(제10조제2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평가대상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내에 [별표 6]에서 정한 필수연구업적, 교육업적, 산학협력업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5.2.11.>
- 제25조(필수연구업적·교육업적·산학협력업적 평가) ① 필수연구업적·교육업적 평가는 교원인사 규정 제41조부터 제42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교육업적 평가기준은 [별표 3-1]의 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20.2.5.,2020.6.17.>
 - ② 산학협력업적 평가는 제20조와 같다.
- 제26조(재임용 절차) ①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교원인사규정 제44조를 준용하여 재임용 절차를 진행한다.
 - ② 재임용 심의 신청 기간 내에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재임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교원은 임용기간 만료일에 당연 면직된다.

제27조(재임용 제출서류) 교원의 재임용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1. 연구업적 목록 1부
- 2. 필수연구업적물 각 1부
- 3. [별표 7]의 재임용에 관한 의견서 1부
- 4. 학부(과) 교수회의록 1부 또는 소속 기관 운영위원회 회의록 1부

제3장 복무 및 신분보장

- 제28조(복무) 교원은 산학협력, 교육·학술연구 및 학생지도에 최선을 다하며 교육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인격과 품위를 갖추어야 한다.
- 제29조(겸직금지) 교원의 겸직금지에 관하여는 교원인사규정 제4조를 준용한다.
- 제30조(책임시수) 교원의 책임시수는 학기당 5시수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대학교 교원 담당시수 및 강의료 지급 규정에 따른다.

- 제31조(신분보장)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또는 면직 당하지 아니한다.
- 제32조(휴직) ① 교원의 휴직기간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중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정관 제44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러하지 아니한 다.<개정 2021.10.20.>
 - ①의2 교원에게는 정관 제44조제13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21.10.20.>
 - ② 교원의 휴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장 보수

- 제33조(보수) ① 교원의 보수는 직위에 따라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교원 보수의 재원은 3 단계산학연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LINC 3.0사업)비, 산학협력단비 및 교비로 한다.<개정 2013.10.16..2018.2.7..2022.6.10.>
 - ② 교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보수만을 지급하고, 영남학원 교직원보수규정, 우리 대학교 교직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교원이 책임시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책임시수 미달시수를 그 다음 학기에 보충하여 야 하며, 미달시수를 보충하지 못한 경우에는 1시수당 연봉총액의 20분의 1을 보수에서 환수한다.
 - ④ 교원에게 평가를 통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성과급의 재원은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사업)비 및 산학협력단비로 한다.<개정 2018.2.7.,2022.6.10.>

제5장 징계

제34조(징계) 교원의 징계 및 징계위원회의 설치는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장 보칙

- 제35조(학부(과) 교수회의 참여 제한 등) 교원은 소속 학부(과)의 교수회의에 참여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소속 학부(과)장은 인사와 관련된 업무를 제외한학부(과)의 교수회의에 교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제36조(교원인사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원인사규정 제8조, 제13조, 제16조, 제21조제3항을 준용한다.
- 제37조(그 밖의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2012.10.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0.1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2.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시행일 전에 신규임용된 교원에게 최초로 적용되는 재임용 요건은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칙(2016. 8.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4.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2. 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학협력업적 평가에 대한 경과조치) 2017학년도 산학협력업적 평가에 대한 [별표 4]의 산학협력 업적 평가 기준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18. 2.28.)

제1조(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직권 수정)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2. 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6.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2.18.)

제1조(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직권수정)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10.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2.25.)

제1조(직제규정 개정 등에 따른 직권수정)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6.10.)

제1조(한시적 기구 폐지 및 신설에 따른 직권수정)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산업체 경력 인정기준<개정 2020.6.17.>

경 력 내 용	경력 인정률(%)	비고
1.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군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100	
2.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100	
3. 민간 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100	

[별표 2] 승진임용 업적 요건<개정 2015.2.11.>

가. 필수연구업적 기준

승진 직위	인문, 사회, 예체능계열	자연 (기초의학 포함), 공학계열	임상의학계열 (병리학, 산업의학 포함)	실기계열	평가대상기간
조교수 → 부교수	420점 이상 (국내/국제저명 학술지 논문 (주저자 기준) 1편 포함)	150점 이상	150점 이상	420점 이상 (개인 발표 1회 포함)	승진임용 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6년 이내

비고

- 1) 실기계열과 예체능계열의 요건 중 개인발표와 논문(주저자 기준)은 상호 대체할 수 있다.
- 2) 국내/국제특허(발명) 주발명자 기준 건수는 국내/국제저명학술지(주저자 기준) 논문 의무게재 편수로 대체 인정할 수 있다.

나. 교육업적 기준

구분	교육업적	교육업적 평가대상기간
조교수→부교수	825점 이상	승진임용 심사 직전 11개 학기

※ 교수업적평가규정에 따른 평가방법에도 불구하고 평가점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점수 요건(학기당 75점 기준)을 면제할 수 있다.

다. 산학협력 업적 기준

구분	산학협력	산학협력업적 평가대상기간
조교수→부교수	2,640점 이상	승진임용심사 직전 11개 학기

※ 산학협력업적 평가점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점수 요건(학기당 240점 기준)을 면제할 수 있다.

[별표 3] 삭제<2020.2.5.>

[별표 3-1] 교육업적 평가기준<신설 2015.2.11., 개정 2020.6.17.>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점수 한도
	강의담당시수	5점 - 책임 미달시수	5	
필수 항목	수업계획서 입력	5점 - (미입력 강좌 수 × 2)	5	100
	강의평가 강의평가점수(100점)*0.9 교양강의 담당 교양강의 담당 외국어강의 담당 외국어강의 담당 강의 공개 교내외 MOOC 운영	90		
	교양강의 담당	교양강의 담당	1	
가섬 평가 항목 강의 공개	외국어강의 담당 외국어강의 담당		1	
	강의 공개	교내외 MOOC 운영	1	4
	강의소개동영상 운영	강의소개동영상 운영	1	
	휴·결강에 대한 미보강	미보강일수 1일 이하 : -1점, 1일 초과 : -2점	-2	
감점 평가 항목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 정폭력 예방 교육 미참여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 교육 미참여 : -1점	-1	-4
07	연구실안전 교육(자연· 공학계열) 미참여	연구실안전 교육(자연·공학계열) 미참여 : -1점	-1	
		합계		100

비고

- 1) 강의평가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학기 강의평가 배점은 70점으로 한다.
- 2) 기타 교육업적 평가 사항은 교수업적평가규정시행세칙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별표 4] 산학협력업적 평가 기준<개정 2015.2.11.,2018.2.7.>

				점수기준	점수	한도	
평가영역	평 🤈	가항목		전 계열 공통	자연,공학, 의학계열	인문,사회, 예체능, 실기계열	비고
	산업체 현	장실습	지도	5점/1회			
산학협력 교육실적	현장실습	기업체	발굴	5점/1회			
	산업체 기	술·경	영자문	15점/1회			
	취업·창업	동아리	지도	10점/1회	100점	170점	
	취업홍보	기업체	방문	5점/1회	100'6	1708	
산학협력	학생취업	알선 및	! 확정	20점/1명			
봉사실적	취업·창업·기	다기개팀	발 강좌	10점/2시간			
	학과(부) 홑	활동 참	여 실적	5점/1회			
	외부연구비 수탁실적	연구간접경비		10점 / 100만원	60점	50점	
산학협력 연구실적		수틱	탁실적	10점/1,000만원	60점	30'8	
	국책,지방자치단체,기업체 과제·사업 제안			10점/1건	30점	30점	
기타	기타 산학	협력 실 여도	적 및	50점/학기당	50점	50점	* 산학협력업적 평가위원회 부여
	기술	이전료		2점/기술료10만원			
	국제특히	헑	출원	10점/1건			
71.72	(발명))	등록	80점/1건			E-1-01 -151
가점 평가	국내특히	尌	출원	5점/1건	(250점)	(250점)	* 특허출원 : 최대 25점 제한
671	(발명))	등록	40점/1건			ZOU MIL
	실용	룡신안		10점/1건			
	디자인			10점/1건			
		합계	점수		300점	300점	

비고

- 1) 산학협력업적 평가점수는 가점평가 항목을 포함하여 합계 점수는 3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 2) 산학협력업적 평가는 해당 교원이 제출한 산학협력실적 포트폴리오와 학부(과)장 의견서를 바탕으로 산학협력업적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며, 점수기준은 상기 표에 따른다.
- 3) 산업체 기술·경영자문은 산학협력단을 통하여 계약하고 산학협력단으로 자문료가 입금된 실적만 인 정한다.
- 4) 외부연구비 수탁실적은 산학협력단 회계로 입금된 실적에 한하며, 대학의 대응자금 및 현물은 제외한다.
- 5) 기타 산학협력 실적 및 기여도 평가는 교원이 제출한 산학협력실적 포트폴리오와 학부(과)장 의견서 를 바탕으로, 산학협력업적평가위원회에서 점수를 부여한다.
- 6) 가점평가 영역은 교수업적평가규정시행세칙을 준용하여 평가하되, 점수기준은 상기 표에 따른다.

[별표 5] 승진임용에 관한 추천서

	소	속			
승진심사 대 상 자	성	명			
	직	위			
목 적			전임교원 승진임; 목적이 있습니다	소속 학부(과)의	발전에
학사행정 협조정도					
학생지도 참여정도					
교내행사 (학부평가 등) 참여정도					
기 타 (교원 윤리 및 품위 유지 등)					
종합의견					

추천자 :	학부(과)장	(91)
우신자.	의 구니까?	() (

[별표 6] 재임용 업적 요건<개정 2015.2.11.>

가. 필수연구업적 기준

구분	인문, 사회, 예체능계열	자연 (기초의학 포함), 공학계열	임상의학계열 (병리학, 산업의학 포함)	실기계열	평가대상기간
부교수	100점 이상	30점 이상	30점 이상	100점 이상	임용기간 (제10조제2항에
조교수	100점 이상	30점 이상	30점 이상	100점 이상	따라 연장된 기간은 제외)

나. 교육업적 기준

구분	교육업적	교육업적 평가대상기간
부교수	210점 이상	재임용 심사 직전 3개 학기
조교수	210점 이상	재임용 심사 직전 3개 학기

[※] 교수업적평가규정에 따른 평가방법에도 불구하고 평가점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의 점수 요건(학기당 70점 기준)을 면제할 수 있다.

다. 산학협력업적 기준

구분	산학협력업적	산학협력업적 평가대상기간
부교수	630점 이상	재임용 심사 직전 3개 학기
조교수	630점 이상	재임용 심사 직전 3개 학기

※ 산학협력 업적 평가점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점수 요건(학기당 210점 기준)을 면제할 수 있다.

[별표 7] 재임용에 관한 의견서

	소	속					
재 임 용 대 상 자	성	명					
	직	위					
목 적	이 의견서는 신 기여도를 평가히		임교원 재임용 대성 이 있습니다.	상자의 소속	학부(과)의	발전에	대한
학사행정 협조정도							
학생지도 참여정도							
교내행사 (학부평가 등) 참여정도							
기 타 (교원 윤리 및 품위 유지 등)							
종합의견							

작성자 :	학부(과)장	(인)